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18 선고 2022가단228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권영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성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3.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14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21. 3. 15. 원고로부터 만기를 2021. 9. 15.로 정하여 1,100,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위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특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21. 3. 17.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피고와 C가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C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1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C는 이 사건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위 대출은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9년경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위 대출 외에도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고 있어 위 대출 및 매매 무렵에는 채권자 은행들 사이에 워크아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2021. 7.에는 위 회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결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 회사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역시 추정되며 (대법원 2001. 4. 24. 선고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해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은 원래 자신 소유인데 C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으로, 이 사건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명의신탁의 해지 및 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4. 7. 26. 피고의 계좌에서 61,163,596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신탁사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납부일 부근에 피고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의 형식으로 돈이 출금된 적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납부되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체한 위 61,163,596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할인 후 분양대금인 586,190,897원 중 일부에 불과한 점, C와 피고는 부부 사이로 상당한 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C 역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이 C 명의로 유지되는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은 C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C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3회 변론기일이 지난 다음에야 사실은 이 사건 지분이 원래 본인 소유였다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였는바 소유자의 태도라기에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5. 6. 10.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의 형식으로 C로부터 이전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가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주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채무를 일부 상환한 다음, 위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위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출금 상환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신규자금 11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인 2021. 3. 15. C에게 11억 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E(이 사건 부동산을 지칭한다) 매입“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와 피고 사이에 대여의 조건이나 위 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을 융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화연

별지